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

전문개정 2001. 6. 1 규칙 제 790호 개정 2005. 7. 27 규칙 제 861호 전문개정 2008. 5. 6 규칙 제 936호 일부개정 2011. 4. 15 규칙 제1010호 일부개정 2014. 10. 17 규칙 제1090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 일부개정 2015. 12. 11 규칙 제1120호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 일부개정 2016. 6. 22 규칙 제1128호 일부개정 2019. 12. 20 규칙 제1222호 일부개정 2023. 11. 29 규칙 제129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20]

- 제2조(신고) 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 - 1. 공공하수도의 사용 개시・중지・폐지・재사용 신고 : 별지 제1호 서식
 - 2.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: 별지 제2호 서식
 - 3.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: 별지 제3호 서식
 - 4.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 : 별지 제4호 서식
- 제3조(일시사용 신고)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4조(준공검사 등)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작물 설치 준공검 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(추 1)

- 제5조(배수설비의 신청)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1. 4. 15〉
 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납부할 배수설비 설치비용·납부장소·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. 〈개정 2019. 12. 20〉
- 제6조(공사신청의 취하)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반려할 수 있다.
- 제7조(공사시행자 지정)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(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)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1. 4. 15, 2014. 10. 17〉
- 제8조(원인자부담금 부과)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1. 4. 15, 2019. 12. 20〉
 - 1.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부과
 - 2.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인가·허가 및 신고시점 부과
- 제9조(감면)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6. 6. 22, 2019. 12. 20, 2023. 11. 29〉
 - 1. 전액감면 :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
 - 2. 10세제곱미터감면 :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, 제4호에 해당하는 자

(추 1)

- 3. 사용요금의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 적용 :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
-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 및 지하수 요금을 감면받는 자로 한다.
-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6. 22〉
-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6. 6. 22〉
- ⑤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6. 22〉

「전문개정 2011. 4. 15〕

부칙 〈2008. 5. 6 규칙 제936호 전문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칙〈2011. 4. 15 규칙 제1010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4. 10. 17 규칙 제1090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〈2015. 12. 11 규칙 제1120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. 6. 22 규칙 제1128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

부칙〈2019. 12. 20 규칙 제1222호〉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. 11. 29 규칙 제1292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77:	티스트이	사용(개시	ᅵᆞ쥐	. 레크	rl . 7	-11 4 1 5	2) AI	- LJ	처리기간		
0	パナエ当	사용(개기	시 ' 당시	• 페/	\ • /	ካ ^rਰ	5) 전	ᅶᄸ	3일		
신청자	주 소			상 호			업 종				
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	<u> 일</u>			전 화				
	사용수	지하수,	하천수,	기티	- ()					
	배출량	생활하수		m	/일	사업	장폐수		m³/일		
신고		자	동모터펌.	<u> </u>				기 타			
내용		규 격			HP	설기	치대수		대		
	양수시설	설치대수			대	구	경		mm		
		관 구 경		1	mm	양선	수능력		m³/일		
		양수능력		m	/일	기	타				
상수도	수전번호	업 종	법 종 월평균사용량				Ē	취사형	}-		
- 0 T-1											
	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(개시・중지・폐지・재사용)을 신고합니다.										
						년	월	Ę]		
					신고	인			(인)		
광 명 시 장 귀하											
첨부기	서류 : 관계]증빙서류		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		-	χl 2	하수 등	Ol AL	요랴	시고	서(원)		처	리기간
			^ ·	71 7 6	— 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0 0	رغدان	YI(Z	.)			즉 시
사 용	주	5	소							상 호		
자	업	Š	종		성명 (대표자) 생년월일							
				자	동모터	펌프					기타	
양	모티) 구	격					HP	설치	개수		대
수	설치	∜개·	수					대	구	경		m/m
시	구	;	경					m/m	양수	능력		$\mathrm{m}^{\mathrm{a}}/\mathrm{H}$
설	양수	구능 ⁱ	력					m³/H	기	타		
>1	용		도									
신 고	사	용	량	일	간			m³	월	간		m³
내 용	비		고									
와				하수도 2합니다.	사용 2	조례	시행규	칙」 제2	조제2	호의	규정에	따라 위
									년	월	일	
								신고인			(인)	
굉	광 명 시 장 귀하											
첨	부서	첨부서류 : 1. 사용량 입증서류 2. 하수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제 입증서류					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	사용량과 배출	호라이 귀시	۸I -	14 				처리기간		
	사용당파 메달	달당의 사이	건-	ᅹᄶᆡ				즉	시	
사 주소			업 중	<u>중</u>		상	호			
상성명자(대표자)		생년월일		·		전	화			
사 용	- 기 간	년	월	일	~		년	월	일	
사	용 량									
차	이 량									
하 수	배 출 량									
신 고	. 사 유									
「광명/ 와 같이 신	시 하수도 사용 고합니다.	조례 시행규	칙」	제2조	제3호	의 -	규정	에 따	라 위	
			<u>ک</u>	년 신고인	<u>]</u>	월		일 (인	<u>]</u>)	
광 명 시	장 귀하									
첨부서류 :	하수배출량을 경	증명할 수 있	는 중	-빙서	류					

[별지 제4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	ō	· 구도 사용	업종 변경	신고시					리기긴	ŀ	
								·	시		
사	주 소					상	호	현행: 변경:			
용 자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		전	화				
	변경일자			년	월	일					
	변 경 전 업 종										
업종 변경	변 경 후 업 종										
내용	변경사유										
와	「광명시 같이 신고		조례 시행구	구칙」 저	세2조제41	호의	ਜ	·정에 I	다라	위	
					년	월	<u>[</u>	일			
				신3	교인			(0	<u>l</u>)		
광	광 명 시 장 귀하										
첨투	부서류 : 변	경사항을 입	증할 수 있는	는 증빙	서류						

[별지 제5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고고딄스트		처	리기간			
공공하수도	그 일시사	ㅎ 신고서				3일
사 주 소			상 호			
장 명 (대표자)	생년월일			전 화		
사 용 목 적	(1) 건축	및 토목공시	J-() (2) 기	타()
사 용 하 수 도 의 위 치						
공 공 하 수 도 의 사 용 기 간						
하 수 배 출 량				:	m³/일	
공 공 하 수 도 의 복 구 방 법						
「광명시 하수도 사용 와 같이 신고합니다.	용 조례 시	행규칙」 제	3조제1	항의 ㅠ	구정에	따라 위
			년	월	일	
		신고	인		(인)
광 명 시 장 귀하						
첨부서류 : 1. 위치도 1투 2. 하수배출령		1부				

[별지 제6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ュ	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간										
0	ᅙᅂᆍᅽ	도 심중 중 [*]	4 E E	기 正히台	i사 선·	성시	7일				
신 청 -	주 소				상 호						
ا دم ا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		전 화					
설치	목 적										
설 치	장 소										
공사실] 시 방 법										
공 사	내 용										
공사	착 공										
기간	준 공										
	광명시 전고학		조례 시	행규칙」 <i>처</i>	4조제1	항의 규	정에 따라 위				
					년	월	일				
				신	청인		(인)				
광 명	병 시 장	귀하									
첨부		설계도서 1 전, 중, 후		메							

[별지 제7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											
	매구얼미	실시중사 선	길성지			7일					
신 주소					상 호						
청 인 (대표자)		생년월일			전 화						
공 사 종 별 신축, 개축, 증축, 재축, 이전, 수선, 기타(유지·보수 등)											
시 공 장 소											
공 사 내 용	관경(mm)	, 배수설비	연장(m)							
건 물 용 도											
	하수도 사용 수설비 설치를 :										
				년 월		일					
		?	신청인		(9	인)					
광 명 시 장 귀하											
첨부서류 :	설치장소 위치	약도 1부									

[별지 제8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	배수설비 설치공사 취하신청서 											
		메구필미 필시	5/1 HU	728M		3일						
신	주 소				상 호							
청 인	성 명 (대표자)		생년월일		전 화							
공 /	사 종 별	신축, 개축, 증축	·, 재축, 이	전, 수선, 기타(유	-지・보	.수 등)						
신 :	청 일 자											
시	공 장 소											
구	사 비		원	납 부 일 자								
취 :	하 사 유											
수 [,]		하수도 사용 조 취하신청서를 제출		↓」제6조제1항의	 규정·	에 따라 배						
				년 {	븰	일						
				신청인		(인)						
광	명 시 장	귀하										

[별지 제9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	-1 4 5	/ 0.3	10:	-		\ 71		- 1 . 1		처리기간	<u></u> 간
	하구노	.(사용료 • 점	급공도	료·누	- 남금) 감	면신	성서		3일	
신 청	주 소				업 종			상 호			
⁷⁸ 인	성 명 (대표자)			생년	월일				전 화		
감	면 기 간		년	월	일	~		년	월	일	
감	면 사 유										
기	타										
와	「광명시 같이 신청	하수도 사용 성합니다.	조리	퉤 시 ^ㅎ	행규칙 ₋	』제9	조제(}항의	규정어	따라 위]
							년	월	ō.	_	
						신청인			(<	인)	
광 명 시 장 귀하											
첨-	부서류 : >	감면을 증명할	수	있는	증빙서	류					

[별지 제10호 서식] 〈개정 2019. 12. 20〉

	국민기	초생활보장수급 하수도 요급	급자,한부모· 금 감면(해		자녀가정
신청 구분	신 규(()	해 지()	
	관리번호			업 종	
수용가	주 소			가 구 수	
	수용가명			연락처	
	세대주명			생년월일	
	자격발생 (해지)일자			전화번호	
감		1. 국민기초생활	보장수급자()	
면 대		2. 한부모·조손기	}족()		
감면대상자	시청구부	3. 다자녀가정 ()		
자	신청구분 및 내역	자녀 성명	생년월일	자녀 성명	형 생년월일
		행 정 정 보	공동 이용	용 동의서	
					·에 따른 행정정보 것에 동의합니다.
	신청	인 :	(서명	또는 인)	
「굉	명시 하수	도 사용 조례 시	행규칙」제93	조제4항에 따리	· 위와 같이 신청
합니	구.				
			년 월	일	
			신	청 인	(인/서명)
				(감면대상자외	- 관계 :)
광 명	시 장 7	비하			
유의사		대상자의 감면 자격 여야 하며 해지신청을			는 수시 요금감면(해지)신청 추징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		H상임을 증빙할 수			